기부금관리 및 운영 규정(안)

제정 : 2018. 3.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외부 단체나 개인이 출연한 기부금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 근거】 조합의 기부금 모집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사목 과 제2호 다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3 26번 항목에 근거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이라 함은 외부 단체나 개인이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현금 및 물품을 말한다.
2. “스스로 조합비(기부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현금으로 매월 10,000원 이상 조합에 증여한 기부금을 말한다.
3. “기부자”라 함은 조합에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기부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4. “취약계층“이라 함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기부금 관리 및 운영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기부금 접수】 ① 조합은 기부금 접수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 한다.
② 기부금을 직접 출연하거나 기부금 전용 통장 또는 자동이체 모집방식(이하 “CMS“이라 한다) 등으로 기부금을 접수 한다.
③ CMS를 이용한 기부금 모집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스스로조합비(기부금) 신청서“를 받는다.

제6조【기부금영수증 발급】 ① 조합은 기부자가 조합에 기부를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기부금 영수증을 대신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1년 단위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기부금 납입 내역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스스로조합비(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시 기부자인 조합원이 원 할 경우 가족의 명의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기부금 납입 내역을 신고 할 수 있다.

제7조【기부금의 회계 처리】 당해년도 모집된 기부금은 전액 당해년도 유동자산에 적립하여 차기년도 지출을 위한 차감계정으로 처리 한다.

제8조【기부금 사용】① 조합은 모집된 기부금을 다음 각 호에 정한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항에만 사용한다.

1. 조합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 비용 충당
2. 보건예방 활동을 위한 의료소모품 구매 비용
3. 보건예방 활동을 위한 제반 경비
4. 취약계층을 위한 외부 단체의 현금 후원 또는 기부
5. 기부금 통장 이체 등에 따른 이체 수수료
6. 기타 이사장이 승인한 사항

② 당해년도 기부금 사용액은 전년도에 모집하여 적립한 계정에서 그 사용액을 차감한다.
③ 전년도에 적립한 기부금을 중 당해년도 미사용액은 차기년도로 이월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진행 중 전년도에 적립한 기부금이 소진 될 경우는 조합의 운영비로 충당한다.

제9조【기부금 처리 승인】① 기부금 사용은 이사장 승인 후 집행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수납시 적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6조 기부금회계처리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용 일자
2. 사용 부서
3. 사용처 또는 대상자
4. 사용 금액
5. 사용 목적
6. 기타

제10조【기부금 공개】① 조합은 기부금의 연간 모금액 및 사용 실적을 다음해 3월 31일 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② 기타 기관에서 요청한 기부금의 연간 모금액 및 사용 실적은 요청 기관에서 정한 시일 및 방법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

부 칙

1. 2017년도 모집한 기부금부터 이 규정에 적용한다.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스스로조합비(기부금) 가입 및 자동이체 신청서

■ 조합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민번호앞6자리)-동명이인 확인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집/직장)		
			핸드폰)		

■ 납부 방법 및 금액

월 기부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_____만원
납부 방법	☐ CMS (아래 별지 작성) ☐ 계좌이체 (농협 : 355-0001-8662-13 하나 : 609-910002-84104)
※ 스스로조합비는 조합의 보건예방활동, 건강증진활동, 지역사회 기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소멸성 회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CMS 자동이체 신청서

CMS 출금일은 **매월 1일**이며, 미납시 재출금일은 **10일**입니다.

o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납 목적	조합비(기부금)
대표자	나준식	사업자등록번호	305-82-12732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법동)		

o자동이체 신청 정보

신청 정보	납부금액	매월 원	납부 기한	☐ 별도 해지 신청시 까지 ☐ 약정기한 까지 (약정 기한 :)	납부 일	o 정기 : 매월 1일, o 미납 : 매월 10일 (1회 재인출)
	은행명			예금주		
	게좌번호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에프엠에스㈜, ㈜앤컴커뮤니케이션,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제휴사 소개 메뉴 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 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효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스스로조합비 제도 및 효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예금주 : (인) 또는 서명

<별지 2>

일련번호	

기부금 영수증

1. 기부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05-82-12732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법동)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4.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년 월	내 용	금 액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40				
계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 4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

※ 작성방법

1.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4. 기부내용"란에 적는 유형·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정,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정치자금,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1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3 , 코드 30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신탁기부금 : 조특법 73 ① 11, 코드 31
   마.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 지정, 코드 40
   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 종교단체 코드 41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 코드 42
   아.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 공제제외, 코드 50
3.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